

『미국 뉴욕州, 전동 모빌리티 기기용 배터리 판매 법안 개정』 심층분석 보고서

2023. 06

통보문서 번호	2023-3346	규제분야	적합성평가, 라벨링, 허가 및 처벌
통보국	미국	HS Code	8506, 8507, 8703, 8711909
작성기관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작성자 문의처	이상훈 031-428-5661

[목 차]

- 1. 규제 개요 1
- 2. 규제 제·개정 내용 2
- 3. 관련 법령 및 표준 4

1 규제 개요

□ 발표 내용

- 미국 뉴욕 주 상원은 리튬 이온 배터리 표준과 전동모빌리티기기용 배터리의 정의와 판매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는 일반기업법 (General Business Law) 개정안을 발표1)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동 모빌리티 기기용 배터리 판매 조항BATTERIES FOR POWERED MOBILITY DEVICES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뉴욕 주 상원New York State Senate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적합성평가, 라벨링, 허가 및 처벌
제·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정 최종안
WTO TBT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통보
고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해당 없음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3년 01월 04일
의견수렴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해당 없음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3년 04월 04일
준수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해당 없음

□ 적용범위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차전지 외Primary cells and primary batteries etc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8506, 8507, 8703, 8711909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26,366,532 (2022년 기준)

1) 관보 URL:
<https://www.knowtbt.kr/mrim/rsti/download?tblNotiSeq=698168&fileMasterSeq=231564&fileSeq=482776>
<https://www.knowtbt.kr/mrim/rsti/download?tblNotiSeq=698168&fileMasterSeq=231564&fileSeq=482777>

2 규제 제개정 내용

□ 규제범위

- (적용대상)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전동모빌리티기기용 배터리

□ 규제 개요

- 뉴욕주 일반 기업법 (General Business Law, GBS)

- 뉴욕주 일반 기업법은 뉴욕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률 모음으로, 주식회사의 설정 및 운영, 주주와 이사의 권리와 의무, 기업 합병 및 인수, 기업 해산 등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 추가된 법률 조항은 뉴욕 주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 분배, 판매하는 기업들이나 전동모빌리티기기를 생산, 분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그 요구사항은 이 문서 ‘개정내용’ 항목 참조

□ 개정 내용

- 개정 내용 요약

1. 리튬 이온 배터리에 적용되는 표준을 명시
 - UL 2271
 - UL 2272
 - UL 2849
2.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인정받은 시험실의 로고와 마크, 이름 등을 제품 포장이나 서류, 제품 자체에 표시할 것을 요구
3. Powered mobility device와 Stock keeping unit의 정의를 명시
4. 전동모빌리티기기용 배터리의 시험과 라벨링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처벌 규정

○ 추가된 조항 내용

3 관련 법령 및 표준

General Business Law 조항 개정(추가)
<p>Article 26. Miscellaneous</p> <p>§ 391-w. 리튬 이온 배터리 표준(Lithium-ion battery standards)</p> <p>1. 개인, 회사, 파트너십, 협회 또는 기업은 이 주에서 어떤 라이트 전기 동력 차량이나 개인 전기 이동 장치(예: 자전거 또는 스쿠터 전원 이동 장치)에 대한 리튬 이온 배터리나 충전기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실험실에서 Underwriters Laboratories(UL) 표준 2271, Underwriters Laboratories(UL) 표준 2272에 부합하다고 인증받지 않은 채로는 제조, 배포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됨. 또한, 해당 배터리가 완전한 전기 시스템의 일부라면 Underwriters Laboratories(UL) 표준 2849를 준수해야 함.</p> <p>2. 이러한 인증 또는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테스트 랩의 로고, 워드마크, 또는 이름은 제품 판매 시 포장이나 문서에 표시되어야 하며, 제품 자체에 직접 표시될 수도 있어야 함.</p> <p>Article 39-H. 전동모빌리티기용 배터리(Batteries for powered mobility devices)</p> <p>§ 899-ggg. 정의</p> <p>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p> <p>1. "Powered mobility device"는 전기 자전거 또는 스쿠터 등의 라이트 전기 동력 차량이나 개인 전기 이동 장치를 의미함</p> <p>2. "Stock keeping unit"는 같은 브랜드 이름, 내용물 수량, 소매 가격 및 다양성을 가진 판매용 품목 각 그룹을 의미함</p> <p>§ 899-hhh. 전동모빌리티기용 배터리의 판매.</p> <p>1. 어떤 사람이든 전동모빌리티기용 저장 배터리를 분배, 판매 또는 판매 제안하지 않는 한, 그것은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테스트 실험실 또는 다른 승인된 기관에 의해 목록화되고 라벨링되어야 하며, 이러한 라벨링은 해당 배터리의 포장에 공개되어야 함</p> <p>2. 이 섹션의 제 1 소단락 또는 이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민사벌금을 부과함:</p> <p>(a) 첫 번째 위반에 대해, 민사벌금은 0달러;</p> <p>(b) 첫 위반의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에 대해 발행된 각각의 후속 위반에 대해, 최대 1,000달러의 민사벌금; 그리고 (c) 이 섹션의 제 1 소단락을 준수하지 않는 각 실패는 재고 유지 단위 하나에 대한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p>

□ 참조 표준

- 동 규정은 다음 뉴욕 주 법령 모음집의 일부임
 - New York Consolidated Laws, General Business Law
 - 상기 규정 URL : <https://codes.findlaw.com/ny/general-business-law/#tid=N86ACF2B03F2411E2BD8FBD1D933E057F>

- 동 규정은 다음 표준과 관련이 있음
 - UL 2271 (ANSI/CAN/UL/ULC Standard for Batteries for Use In Light Electric Vehicle (LEV) Applications)
 - UL 2272 (ANSI/CAN/UL Standard for Electrical Systems for Personal E-Mobility Devices)
 - UL 2849 (Electrical Systems for eBikes)